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**NH-Amundi 필승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**
2. 효력발생일 : 2026 년 7 월 23 일
3. 정정사유 :
 - 수익증권 매입 환매시 기준가 적용시간 변경(15:30 → 17:00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 23 조(판매가격)	①(생략)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5 시 30 분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 28 조제 2 항을 준용한다)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(현행과 동일)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<u>17 시</u>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 28 조제 2 항을 준용한다)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 25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<u>15시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<u>15시30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~④ (생략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 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~④ (현행과 동일)
제26조(환매연기)	①~⑥ (생략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(수익자가 <u>15시30</u>	①~⑥ (현행과 동일)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

	<u>분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략)	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(수익자가 <u>17시</u>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동일)
부칙	<신설>	<u>(변경시행일) 이 변경신탁계약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